영등포구의회 제204회 임시회

#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·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# 檢討報告書

【김길자 의원 발의】



2017. 10. 23.

行政委員會 專門委員 崔光黙

# 어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·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 관한 조례안』 檢計報告

#### 1. 경 과

의안 제280호로 2017년 10월 13일 김길자 의원 외 5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17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# 2. 제안이유

관내 학생들의 창의·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지원 하고자 함.

#### 3. 주요내용

- 가. 창의교육과 인성교육에 대한 용어 정의(안 제2조)
- 나. 창의·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구청장 책무(안 제3조)
- 다. 창의·인성 교육의 사업 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, 안 제6조)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인성교육진흥법」,「교육기본법」,

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,「진로교육법」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
#### 5. 검토의견

이 조례안은 관내 학생들의 창의·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, 총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#### O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

-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3조에서는 창의·인성 교육의 추진방향을 설정하고, 창의·인성 교육 활성화를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가 유기적 연계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.
- 안 제4조에서는 장애 여부나 소득 수준 등에 차별됨이 없이, 창의·인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균등한 기회 제 공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,
- 안 제5조에서는 다양한 체험 활동이 포괄적으로 포함되도 록 사업범위를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6조에서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 하였음.

○ 검토결과, 본 조례안은 창의력과 인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, 이미 시행되고 있는 창의·인성 교육을 보다 효 과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# 참 고 자 료

# 1 인성교육진흥법

- **제4조(국가 등의 책무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,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 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범국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⑤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인성교육에 관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.
- 제11조(인성교육 지원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,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(이하 "인성교육프로그램"이라 한다)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③ 교육감은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계획을 해당 학교 인터 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④ 학부모는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의 인성교육 진흥 시책에 협조 하여야 하고, 인성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

건의할 수 있다.

⑤ 그 밖에 가정,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진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2 교육기본법

- 제4조(교육의 기회균등) ① 모든 국민은 성별, 종교, 신념, 인종, 사회적 신분,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 지 아니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7.12.21.]

### 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

- 제5조의2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교육청 상호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,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5.5.18.]

# 4 진로교육법

- 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, 북한이탈주민,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③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"공공기관"이라 한다)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.